



선	기관의 장
람	

제1449호

2026년 9월 30일(수)

- 차 례 -

예규

제83호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일부개정예규

- 1

고시

제2026-206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방관리 방조제(당산지구)
개보수공사 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 15

예 규

강화군 예규 (발령)

1. 제 명 :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일부개정예규

2. 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으로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제한함에 따라 관련 지침 개정
- 재해예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행위(단독주택 등)의 경우 예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

3.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법정도로 및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삭제
- 발전시설 부지 경계 200미터 이내 5호 이상의 주택 위치 시 입지 제한
-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 동의 조항 삭제 및 시공 기준 신설
-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 예외 조항 신설
- 총공사비(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1,500만원 미만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조항 신설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9월 30일

강 화 군 수 박 용 철

강화군 예규 제 83 호

붙임: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일부개정예규 1부.

강화군 예규 제 83 호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일부개정예규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전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제1항제8호 중 “관련없”을 “관련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보행자 낙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태양광 모듈의 끝선이 건축물의 마감선(「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부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5kW 초과 설비는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관계전문기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 시공할 것

다. 설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에 직접 고정할 것. 다만,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전체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변 경관 및 농지 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이행보증금 예치의 면제) ①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중 총공사비(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한다)가 1천500만원 미만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 대상이거나 재해 발생 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건축의제 포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서식]

원상복구 이행확약서

1. 민원인

- 성명(법인명):
- 주소/사업장:
- 연락처:

2. 인허가 사항

- 개발행위허가 번호:
- 허가일자:
- 공사명/위치:

3. 동의 내용

본인은 상기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이행보증금이 면제된 조건으로, 토지 훼손, 토사 유실, 환경오염 등 허가조건에 따른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사유 발생 시 해당 복구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4. 위반 시 조치

이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에 따라 대집행 조치 및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기타

작성일: 20 년 월 일

민원인 성명/대표자: _____ (서명/도장)

강화군수 귀중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제 정) 2016.01.01 예규 제55호
 (일부개정) 2017.05.30 예규 제57호
 (일부개정) 2019.08.14 예규 제61호
 (일부개정) 2019.09.23 예규 제62호
 (일부개정) 2020.06.02 예규 제65호
 (일부개정) 2022.11.21 예규 제73호
 (일부개정) 2024.05.16 예규 제75호
 (일부개정) 2025.05.08 예규 제78호
 (일부개정) 2026.09.30 예규 제83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행위를 유도하여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과 생활환경, 농촌경관, 문화경관, 해안경관 등을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토지 이용이 이들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에서 제시하지 않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제2조(적용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0.6.2.>

제3조(구조물의 설계 및 설치) ① 구조물의 기초는 국토교통부 고시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0.6.2.>

②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공고 「콘크리트 구조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0.6.2., 2022.11.21.>

③ 절토사면에는 보강토 옹벽의 설치를 지양한다. 다만, 신공법에 따라 안전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④ 보강토 옹벽의 보강재가 매설될 계획이 있는 경사면에는 공사로 인하여 보강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오수관 매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2.>

⑤ 보강토 옹벽 시공 시 보강재는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르고, 보강재 길이는 전면판 기초부터 벽체높이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2.5미터보다 길어야 한다. 또한, 보강재의 설치길이는 전체높이에 걸쳐 동일하게 설치하고, 보강재의 수직설치간격은 0.8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전면벽체는 기초지반 내로 최소 50센티미터 이상 근입하고, 경사지반의 경우에는 60센티미터 이상 또는 기초지반의 동상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심도 이상 근입한다. <개정 2025. 5. 8.>

제4조(절토사면 처리) 절토사면 최상부에는 우수의 사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고 시공 시 콘크리트 현장 타설을 권장한다.

제5조(녹지공간 확보) ①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부지는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녹지공간의 수목은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변이나 토지경계 부분은 가림식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지붕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건물형태나 지붕형태, 색상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현황도로의 세부 인정기준) 「도로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비도시지역(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현황도로의 인정기준 구체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8.>

1. 현황도로 인정기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사실상 개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제외)

나.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다수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 안길도로

다.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이미 다른 인허가를 받아 준공된 도로

2. 현황도로 제외기준

가. 임도(임업 경영을 위한 작업로를 포함하되 전·답이 다수 포함된 도로는 임도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포장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토지가 포함된 도로

다. 도로의 개설(포장)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도로의 포장 대부분이 임야로 이루어진 도로

라. 다른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부지가 분할되지 않아 사실상 사유지인 도로

마. 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으나,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

3. 현황도로 인정범위

가. 현황도로는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등 인공 구조물로 포장된 부분을 너비로 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현황도로에서 도로 길 어깨(갓길) 부분은 도로와 길 어깨의 높이 차가 50밀리미터 이내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유효너비로 인정할 수 있

다.

다. 허가권자는 현황도로의 세부 인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로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지목, 도로의 형성 경위, 도로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황도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21.>

제7조(배수처리시설) ① 우수량 산출 시 사업시행 전후의 유출계수 및 배수유역 면적을 비교하여 우수관의 통수능력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유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20. 6. 2.>

② 계획 배수로와 연결되는 기존 배수로가 구조물인 경우에는 필요하면 사용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사업부지의 지역에서의 배수 흐름의 차단 또는 배수흐름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외곽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8조(토량 반·출입 계획) 개발행위 사업장에 절토나 성토가 수반될 때 이동토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른 토지의 불법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량 반입 및 반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2025. 5. 8.>

제9조(개발행위허가 기간산정) ① 개발행위허가의 최초 허가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초 허가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8. 14., 2025. 5. 8.>

제10조(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7.05.30.>

1. 삭제 <2026. 9. 30.>

2.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8. 14., 개정 2019. 9. 23., 2020. 6. 2.>

3. 철새 등 조류의 이동경로 방해 및 충돌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보전산지 및 수목의 집단서식지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임야가 아닐 것

5. 삭제 <2025. 5. 8.>

6.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7. 발전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8. 14., 개정 2019. 9. 23., 2020. 6. 2., 2025. 5. 8., 2026. 9. 30.>

8. 토지형질변경 여부 및 시설규모와 관련 없이 계획의 적정성, 입지여건,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2026. 9. 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05.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한 경우 <개정 2025. 5. 8.>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설 2025. 5. 8.>, <개정 2026. 9. 30.>

가. 보행자 낙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태양광 모듈의 끝선이 건축물의 마감선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부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26. 9. 30.>

나. 5kW 초과 설비는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관계 전문기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 시공할 것 <신설 2026. 9. 30.>

다. 설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에 직접 고정할 것 다만,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전체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6. 9. 30.>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신설 2025. 5. 8.>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공공기관 등의 주민 참여형 사업 포함) <신설 2025. 5. 8.>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5. 5. 8.>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변 경관 및 농지 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 9. 30.>

[제목개정 2026. 9. 30.]

제11조(이행보증금 예치의 면제) ①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중 총공사비(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한다)가 1천500만원 미만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 대상이거나 재해 발생 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부칙<예규 제55호, 2016.1.1. 제정>

이 지침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57호, 2017.5.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5.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있어서는 종전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예규 제61호, 2019. 8.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있어서는 종전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62호, 2019. 9.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있어서는 종전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65호, 2020. 6.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있어서는 종전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73호, 2022.11.2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있어서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75호, 2024. 5. 16. 개정>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78호, 2025. 5. 8.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발령 후 개발

행위(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건축의제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예규 제78호, 2025. 5. 8.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7호의 개
정규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건축의제 포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고시

[지방관리 방조제(당산지구) 개보수사업]

강화군고시 제2026 - 206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2026년 9월 29일

강 화 군 수

1. 사업목적 : 국토보존 및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함
2. 사업명 : 지방관리 방조제(당산지구) 개보수사업
3.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425번지 일원
4. 사업면적 : 수혜면적 181ha
5. 사업개요 : 방조제 근고공 설치 L=1.248km
광망 설치 0.18km
수제공 보강 5개소(당초 : 0.531km → 변경 : 0.469km)
통신시설 1.507km
배수갑문 이설 2.5*3.0*9련
방조제 사면보수 0.182km
6. 총사업비
 - 당초 : 14,158백만원(국고 : 7,079백만원, 지방비 : 7,079백만원)
 - 변경 : 14,158백만원(국고 : 7,079백만원, 지방비 : 7,079백만원)
7. 사업기간 : 2022년 12월 - 2026년 12월
8. 시행계획 열람장소 : 강화군청 하수하천과(하천방재팀 ☎032-930-3697)

열람서류 1. 설계도서
2. 위치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km)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투자	2026 년도	사업 기간	사업 목적	비 고
		연장	배수 갑문						
계	1개지구	1.248							
지방관리방조제 당산지구 개보수공사	송해면 당산리 일원	1.248	2.5*3.0*9 런	14,158	8,470	5,688	2022 - 2026	국토보존 및 농경지보 호	당초
				14,158	8,470	5,688	2022 - 2026		변경

1 사업지구 위치도(인화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당산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위치도 및 평면도

